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197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8. 30.

발의자 : 박경흠, 강혜순, 안영호, 문기호, 문희성
김도운, 이명녀, 김태욱, 정재환, 홍영진

1. 주 문

의원에 대한 자격·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가. 구성목적 :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
심사

나. 구성인원 : 7명

다. 활동기간: 구성일 ~ 2026. 6. 30.

2. 발의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자 함

3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
제1조, 제2조

근거법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□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」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□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“윤리특별위원회”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윤리심사 및 징계·자격심사(이하 “윤리심사 등”라 한다)를 위하여 설치하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